

# 농약 판매상에 바란다!

- 품질 향상
- 유통 원활
- 적정 사용

당면과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필요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생물검사과장  
조 남 길

오늘날 농약이 농산물 증산에 필  
요불가결한 영농자재임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며, 농약의 원활한 공급  
에 이바지하여 오신 농약 판매상 여  
러분들의 역할은 생산자, 소비자 못  
지 않게 또한 큰 것입니다. 병해충과  
잡초 방제를 위해 농약이 반드시 필  
요한 것이긴 하지만, 농약공해에 대  
한 반론의 소리도 드높아가는 상황  
임을 고려할 때 생산자, 판매자, 사  
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  
용하도록 규제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도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  
니다.

농민의 농약에 대한 민원의 유형  
을 살펴보면, '대상작물에 대한 약효  
가 없다', '약해가 발생되었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만, 이를 확인하여 보면 거의가 잘  
못 사용한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민

원들을 줄여볼 수 있을까 생각한 끝  
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소비자와 직  
접 연결되고 있는 판매상 여러분들  
이 꼭 알아두어야 하고 지켜야 할 일  
들을 당부드리고자 함이 이 글을 쓰  
는 근본의도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 꼭 알아두고 지켜야 할 일

먼저 농약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  
자인 농민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꼭  
준수하여야 할 사항부터 설명드리고  
자 합니다.

### 가.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 말아야

농약은 반드시 정부 당국이 고시  
한 품목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며 또한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  
별 함유량, 적용병해충, 약효보증기



◇ 적발된 무고시·무등록 농약들 —  
마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처럼 외국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에 제조회사에서 판매하는 모양과 다름이다.

간,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부정농약이므로 절대로 구입·판매해서는 안되겠으나 아직까지도 무고시, 무등록 농약이 적발된 사례(표1)가 있으니, 이러한 부정농약은 받아놓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나.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은 반품·폐기토록

농약은 정밀화학제품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약효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약효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효가 없는 농약을 판매하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팔아서는 안되는데도 판매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약을 판매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은 대부분이 성수기가 지난 후인 10월말까지이므로 11월 이후에 채고 농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신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은 제조회사가 수거하여 다시 제조하거나 폐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판매자로서는 이러한 채고농약이 발견되면 시·군의 농약검사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에 봉인조치를 받아 반품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강

〈표 1〉 무고시(무등록)농약 판매사례

농약명	규격	포장	단위	판매단위	제조회사	표기	내용
비에취	분임수	중이상자	450g	연고포제	한일대	화학	초화류관엽식물, 채소, 과수의 진딧물에 사용
오트	수	P E T 지	200g	연고포제	상업사	화학	무등록, 도열병, 과수의 진딧물에 사용
고농축유염화티알	"	지	500g, 1kg	1,000	농업사	화학	오갈병, 뿌리썩음병에 사용
인산화소	"	지	500g	4,500	경기농산주식회사	화학	오갈병, 냉해방지, 뿌리썩음병 예방
ROO TONE F	분수	지	200g×10	6,000	UNION CARBIDE	화학	배꽃썩음병, 곰팡이병균예방, 연부병, 근부병, 발근촉진제
BERRY · SET	분수	지	56g	10,000	미	화학	생장촉진제
Blossom · set	유분액	지	12온스	200	"	화학	만기용 특수 호르몬제
Transplantone	유분액	지	8온스	6,000	"	화학	토마토용 강력 호르몬제, 화방살포용 수정 및 장
그리나	액	지	3.2온스	10,000	한국원예저제센터	화학	발근촉진제
ACM	수화제	지	300ml~500ml	2,000	서울특별시농업기술연구원	화학	식물생장조정제, 수분증산억제제
Sevin	수화제	지	900cc	600엔	미	화학	사과나무 부란병약
베섹스	수용제	지	10LBS		대성농산	화학	살충제
나메도	수용제	지	5g		삼일	화학	바이리시스질병 예방
가타도	수용제	지	3g×12 (20g×3포)		"	화학	냉해·병충해 효과
Captan	수화제	지	60g		"	화학	달팽이퇴치약
가루스나이트	수화제	지	500g		"	화학	점두, 진정도포제
I A	수화제	지	250g		"	화학	살균제
마푸루투스	수화제	지	100g		"	화학	진정상처도포제
갓도파스타	수화제	지	10g		"	화학	살목, 발근촉진제
Bayleton	수화제	지	135g		"	화학	식물생장촉진제
日曹모스	수화제	지	200g		"	화학	각종 분체 전정기 공구에 도포
NAA 酢酸나트륨	수화제	지	30ml		"	화학	살균제
Topstin · M	수화제	지	50g		"	화학	살충제
	수화제	지	50g		"	화학	생장조정제
	수화제	지	250g		"	화학	탄저병, 백반병, 흑반병, 갈반병

조드립니다.

**다. 포장지 식별이 곤란한  
농약이나 표기내용을  
변조·판매 않도록**

제조공장에서부터 운송도중 훼손되거나 판매소에서 보관 또는 취급 부주의로 약액의 누출, 라벨의 훼손 또는 탈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러한 농약은 공급자로부터 농약을 인수는 물론 판매하는 일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시된 라벨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이유로 변조 또는 별도 판매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라. 개포장·분포장 판매 및  
자체검사필증이 없는  
농약의 판매금지**

농약은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자체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출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농약은 품질불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약은 공급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취급하지 말기 바라며, 특히 농약의 용기나 포장물을 개봉하여 여러 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은 부정품의 거래 또는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판매는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마. 맹독성 농약의  
취급·판매 제한**

농약은 독성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으로 구분<표2>하고, 이 독성구분에 따라 공급대상, 수송, 보관, 판매 및 사용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맹독성 농약은 시판상에서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으니 절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와 함께 몇가지 부탁**

다음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덧붙여서 몇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농약의 보관 및  
변질예방 철저**

농약은 보관시 의약품, 식품 및 사료 등의 보관장소와 구획·구분하여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고 창고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깔판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진열대에 차광시설이 없어 햇볕 등에 일정기간 경과하면 화학물질의 변화 등으로 약효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나. 농약가격 표시제의 이행과  
농약 판매대장 기입  
당해년도 생산농약은 희망소비자**

〈표 2〉 농약의 특성구분과 취급제한기준

특성구분	농약명	품목명(상표)	취급제한기준
맹독성농약 (2개 품목)	일말이나방약 솔잎혹파리약	파라치온유제 테비임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 : 조밀정, 진배정, 산림정, 농협에 한함. 다만, 테미입제는 산림정에 한함</li> <li>수송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혼적수송금지</li> <li>보관 : 환풍기를 설치하고 "맹독성 농약창고"임을 표시, 고독성 농약, 보독독성 농약과 별도 보관하고 시건장치, 판매 : 별도 진열장("맹독성 농약"이라 표시)을 설치하여 진열관매</li> <li>사용 : 파라치온유제는 파수 이외의 모든 농작물에 사용 금지, 테미입제는 소나무 이외의 임목 및 농작물에 사용 금지하며 산림정장이 지정하는 취급관리책임자에 한함.</li> </ol>
	고독성농약 (32개 품목)	일말이나방약 진딧물약 깍지벌레약 응애약 심식나방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카르복스유제, 포스투수화제(이미단), 디디비피유제, 이피에유제, 이진포수화제(구사저온), 아조포유제(호스타저온) 포스핀액제(다이메르론), 모노포액제(이조드린·뉴바르론), 메타유제(메타시스투스), 비미드액제(길발), 헬테노유제(호스타지), 비소릴액제(메리트), 살비린피유제, 벤즈유제(온롤) 피라디피유제(뉴단)</li> <li>메카범유제(모프스), 메치온유제(수프라사이드) 가보지수화제(트리치온), 알리포유제(포락) 다수진수화제(다이아톤), 포스톤유제(톱벨), 이피엔수화제</li> <li>클나방약 배추흰나비약 담배나방약 토양소독약 저극해충약</li> <li>오메톤액제(호리마트), 디디분유제(관백) 그로빈유제(벌엔), 메타포액제(모니타) 메소릴수화제(안네이트), 지오릭스유제 쎄이론혼중제, 클로로피코르틴혼중제 인화농정제(에피폼), 에칠브로마이드혼중제</li> </ol>
보통독성농약 (32개 품목)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전품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송 : 맹독성 농약과 동일</li> <li>보관 :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시건장치</li> </ol>

※ 농약의 품목수는 1987년 12월 31일 현재기준임.

가격(권장소매가격)이 인쇄·판매되고 있으나 이월 재고 농약등은 전년도 가격이므로 스티카 등을 부착·판매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품목별·구입처별 구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철저히 기입함은 판매상 자신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고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니 농약관리대장을 기재하여 보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불량농약의 봉인 및 수거 협조

시·도(시군)단속공무원 또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직권검사에 의해 기준미달인 불량농약의 모집단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시·도(시군)를 통하여 판매상 여러분들에게 통보(1987년 16건)하여 완전 수거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자기 창고 또는 판매 구역 내에 이러한 동일 모집단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혹시 발견되면 시·군 단속공무원에게 연락, 봉인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라. 무조건 농민이 원하는 농약, 이익이 높은 품목만의 판매 지양

병해충이나 잡초에 알맞은 농약을, 제때에 알맞은 희석배수로, 정해진 양을 사용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농약인데 이러한 과제를 분담하여 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농약의 약효나 약해 등에 개의치 않고 농민이 달라는 농약만을 무조건 판매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익이 높은 품목만을 판매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농약을 사러 온 농민에게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판매하되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농약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정확한 정보 및 지식없이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지도기관의 자문과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기발전을 위한 지식탐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불량농약 적발에 적극 협조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농약을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계법규나 행정지도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농약

〈표 3〉 부정·불량농약 단속현황

위 반 사 황	84		85		86		87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무고시 무등록 농약판매	10	18	55	63	14	14	6	6
취급 제한 농약 판매	2	4	5	5	1	1	1	1
농약 분포장 판매	-	-			1	1		
관리인 미상주	10	16			6	6	2	2
포장지 훼손	12	20	24	32	2	3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	29	59	30	54	11	14	12	44
약효보증기간 변조 및 삭제	5	10						
판매업 시설 기준 위반	2	4						
개포장 및 분포장 농약판매	1	1	4	4				
판매대장 미기재	2	3						
허위 표시 농약 판매			1	1				
가짜 표시 미게시			5	13				
계	73	135	124	172	35	39	21	53

검사 공무원의 단속이나 점검의 필요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지난해 해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지적한 조치(표 3)만 해도 적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농약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 있는 듯하여 농약판매상 여러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불량농약 적발에 대한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부터 농약을 공급받을 때, 또는 판매한 농약의 사용자로부터 약효, 약해 등의

여론이 있을 때 등 농약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농약검사 공무원에게 알려 시료를 받취하여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검사 의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그의 적정한 사용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며,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농약을 판매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는 요망사항 또한 많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농약 판매상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